

「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핵가족화·맞벌이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로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
-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및 부모의 일·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사 무 명 : 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
- 추진근거
 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 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
 -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)
 - 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 제10조, 제11조, 제13조
- 위탁사무 :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전반
 - 맞벌이 등 자녀의 긴급 질병 대처가 어려운 가정에 아픈아이 병원진료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

○ 시설개요

- 소재지 : 구미시 백산로 19, 1층(송정동)
- 규모 : 99.2㎡(30평)
- 지원시설 : 돌봄(간호)실, 놀이(학습)실, 사무실 등

○ 위탁기간 : 2023. 6. ~ 2026. 5.(3년)

○ 위탁조건

- 수탁업무 외 위탁 및 법인, 단체사무 처리 불가
- 보조금 및 수익재산은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만 직접 사용하여야 함
- 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,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, 구미시와의 협약서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,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

○ 소요예산(산출근거) : 연간 134,340천원 정도(도비 30%, 시비 70%)

4. 참고사항

○ 관련 법규 : 「아이돌봄 지원법」, 「구미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

○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: 「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」 심의 결과 “적정”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구미시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」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맞벌이 등 자녀의 긴급 질병 대처가 어려운 가정에 아픈아이 병원진료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시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은 적합하다고 판단됨.
- 집행기관에서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아픈아이 돌봄사업을 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.